

2016.10.1.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안내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개정(2015.12.9, 2016.6.23)으로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시행되기에 안내하오니, 2016.10.1.부터(처방·조제일 기준)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주요 변경내용

❑ 약제 보험 등재방식 개선으로 제품코드(약가코드) 변경 발생

-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으로 개선

☞ 약가코드가 삭제고시 된 5,149품목은 '16.10.1.이후 처방조제된 경우 구(舊) 약가코드로 청구 불가

❑ 제품명 표기방식 변경 : 제품명 뒤에 ‘_(주성분총함량/규격)’ 추가 표기

- 식약처 허가사항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간의 구별을 쉽게 하여 정확한 처방·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고자 표기방식 개선

※ (예시) 세토판액(아세트아미노펜) → 세토판액(아세트아미노펜)_(16g/500ml)

◆ 요양기관 준비 사항

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고시 개정에 맞추어 청구SW업체에게 변경된 약제급여목록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청구프로그램 개발 협조 요청을 실시하여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변경된 신(新) 약가코드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.

- 약제급여목록이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되어 등재되었고, 이와 관련 **요양기관**은 청구 방법도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**정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**를 위해서는 **사전 준비가 필요함**
- 특히, 2016.10.1.부터는 약가코드가 삭제고시 된 5,149품목을 구(舊) 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에는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
 - 가능한 **2016.8월부터는 약제급여목록 개편 내용에 따라 신(新) 약가코드로** 요양급여비용을 **청구하여 청구방법에 대한 적응 및 숙지 필요**
- 만약 현재 사용하신 청구프로그램에 신(新) 약가코드가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청구SW업체에 신속한 개발을 독려해 주기 바람

◆ 영양기관 협조 사항 [처방전 기재시]

- 영양기관(의사 등)은 처방전에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복지부 고시)에 따른 약가코드와 제품명(주성분총합량과 규격 포함)을 명확히 기재하고, 동 내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처방전 프로그램 보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문의처

- 약제급여목록 개편 관련 자세한 업무안내와 청구방법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
- 홈페이지 주소 : www.hira.or.kr “알림→공지사항 2588번(2016.7.28.)” 게시물 참고
-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: 전화) 02-2182-8507, 8510, 8516

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 예시

생산규격단위로 처방한 경우

- 도모호론크림 20g/개를 처방한 경우

[변경전] 「1회 투약량」란에 총 투약량(20g)을 기재하고, 「1일 투여 횟수」 및 「총 투약일수」란에는 모두 1로 기재

코 드	1회 투약량	일투	총투
657300410	20	1	1

[변경후] 「1회 투약량」란에 총 투약량(1개)을 기재하고, 「1일 투여 횟수」 및 「총 투약일수」란에는 모두 1로 기재

코 드	1회 투약량	일투	총투
657300412	1	1	1

대용량 포장에서 소분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

- 도모호론크림 500g/병에서 20g을 처방한 경우

[변경전] 「1회 투약량」란에 총 투약량(20g)을 기재하고, 「1일 투여 횟수」 및 「총 투약일수」란에는 모두 1로 기재

코 드	1회 투약량	일투	총투
657300410	20	1	1

[변경후] 「1회 투약량」란에 총 투약량 0.04(1/25,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)을 기재하고, 「1일 투여 횟수」 및 「총 투약일수」란에는 모두 1로 기재

코 드	1회 투약량	일투	총투
657300413	0.04	1	1